

#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봉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9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이봉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길영, 김영옥, 김영철,  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 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  
남창진, 박 석, 박성연,  
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 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 
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 
유만희, 윤기섭, 윤영희,  
이성배, 이종태, 최민규,  
허 훈 의원(3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,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3.3.28. 개정, '23.9.29. 시행)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(안 제13조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자료 제출 명령)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 
법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u>&lt;신   설&gt;</u>	<p><u>제13조(자료 제출 명령) 시장은</u>  <u>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</u>  <u>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</u>  <u>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</u>  <u>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</u>  <u>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</u>  <u>문서로 하여야 한다.</u></p>